

기안용지

(전화 : 713 - 6155)

시행일
특별취급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분류기호 | 별부 0224 |
| 문서번호 | 10.5.3.1 |
| 보존기간 | 10.5.3.1 |
| 수신기관 | |
| 보존기간 | |
| 시행일자 | 1990. 7. 23 |
| 부처 | 전 결 |
| 초기 | 기회 |
| 기일 | |
| 관 | 법무부령관 |
| 기안제안자 | 법제처장 |
| 장유 | |
| 수신 | 기안참조 |
| 상구 | |

1052

결재

합장시 통배

검열
1990. 7. 23
중재판

207

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

발령

(제1안)

수신 : 내부결재

제목 : 같은 것

1.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

을

서울특별시법제처부처령규칙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

보에 게재 명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명령안 1부.

(제2안)

수신 : 공보관

내 목 : 시보 게재

1. 인천 서울특별시 와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을

시보에 게재 발행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, 끝.

(제 3 인)

수 신 : 예산담당관

내 목 : 훈령 발행

1. 예산02110-139 (90 . 7 . 18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 와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을

시보에 게재 발행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, 끝.

서울특별시 약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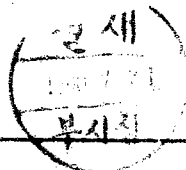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년 7월 23일

서울특별시장

고

인



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

제 1 조 (목 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,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재정부담 기준에 관하여 법령,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재정부담의 종류와 기준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업무분야별 경비의 기준(이하 "재정부담기준"이라 한다)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재정영편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 부담을 허가나 또는 추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재정부담에 따른 재원의 종류) ① 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소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시비 및 구비로 구분 부담함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비

- 가.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
- 나. 기 금
- 다.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및 적
- 라. 기 탁

2. 작 치 구 비

가.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원

나. 기 금

다. 기 탁

부

부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기준(제3조 관련)

| 소관 | 사 무 분 야 | 경 비 부 담 구 분 | |
|-----|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자치구비 |
| 내무국 | 1. 인건비 | ○시산하 공무원의 급여 및 관련경비 | ○자치구산하 공무원의 급여 및 관련 경비 |
| | 2. 영선사업 | ○시영선사업 | ○구영선사업 |
| | 가.구청사건립 | ○구영선사업 일부 - 신규건립 :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50% - 증·개축 : 소요액의 50% | - 신규건립 :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50% - 증·개축 : 소요액의 50% |
| | 나.구민회관 | - 부지매입, 신축비 50% - 증·개축 50% | - 부지매입, 신축비의 50% - 증·개축 50% |
| | 다.구의회의사당 | - 신축 · 건축비 50% - 증·개축 50% - 입차 50% | - 신축 · 부지확보 100% · 건축비 50% - 증·개축 50% - 입차 50% |
| | 라.동청사건립 및 증·개축 | - 신설에 따른 신규 동청사 건립비 50% | - 신설에 따른 신규동청사 건립비 50% - 확장, 이전에 따른 신축 및 증·개축비 전액 |

| 소관 | 사무분야 | 경비부담구분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자치구비 | |
| 내무국 | 3.통만장 운영, 지원 격려 | - | 통만장 수당지급 및 격려 경비 전액 | |
| | 4.공직선거 | ○시의원 선거 경비 | ○구의원 선거경비 | |
| | 5.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| ○호적 및 주민등록 총괄 관리 | ○호적 및 주민등록 발급 관리 | |
| | 6.새마을소득사업 | | ○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| |
| | 7.새마을 시설물 운영 | ○새마을시설물 운영관리 지도 | ○새마을시설물 운영관리 | |
| | 8.각종 사회단체 지원 | ○시단위 조직에 대해 사업단위로 예산지침 범위내 지원 | ○구단위조직에 대해 사업단위로 예산지침 범위내 지원 | |
| | 재무국 | 9.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| ○시세와 시세외 수입의 부과징수 | ○구세와 구세외수입의 부과징수 ○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○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 및 시가조사 |
| | | 10.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의 감사와 재산의관리 | ○시에산 편성,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| ○구예산 편성,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|
| 11.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| | ○시행정장비 관리 및 행정관리 개선 ○행정전산화 업무총괄 조정 및 시행 | ○구행정장비 관리 및 행정관리 개선 ○행정전산화 추진 | |
| 12.공유재산관리 | | ○시유재산관리 | ○국유, 구유재산관리 | |

| 소관 | 사 무 분 야 | 경 비 부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| 서 율 특 별 시 비 | 담 구 분 자 치 구 비 |
| 시 민 생활국 | 13.쓰레기청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광역단위 일반폐기물 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-쓰레기매립장 및 시설 -쓰레기처리장비 확보 및 운영 (중계처리장-해안매립장) -분뇨처리장 -쓰레기중계처리장 -기타 일반폐기물 종말처 리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단위 일반폐기물의 치 리 -쓰레기 수거 및 처리 -쓰레기 수거 인력 장비 유지관리 (청소원, 차량, 기타장비) ○일반폐기물 중간, 간이처 리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-쓰레기적환장 -쓰레기 중간집하장 -기타 중간, 간이처리 시 설 ○소규모 공동이용 위생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-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 -이동식 화장실 -기타 공중용 위생시설 |
| 보 건 사회국 | 14.주 민 복 지 일반에 관한 사 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시민복지증진 및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민복지 증진 및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 |

| 소관 | 사무분야 | 경비부 | |
|-----------|--|---|-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담구분 자치구비 |
| 보건 사회국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진체구에 공통되는 복지 업무의 연계, 조정, 지도 및 조연에 관한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단위 지역주민 이용 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, 지원 ○구민복지 상담 ○기타 환경위생 증진등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일반 시책사업 추진 |
| | <p>15.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</p> <p>16.생활보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-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-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○생활보호 일정액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활보호(긴급구호) : 시비 100% - 거택보호 : 국비 50%, 시비 25% - 시설보호 : 국비 50%, 시비 50% - 의료보호 : 국비 50%, 시비 50% - 직업훈련 : 국비 100% - 취로사업실시(총소요의 50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생활보호의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활보호(긴급구호) : - - 거택보호 : 구비 25% - 시설보호 : - - 의료보호 : 시위임 집행 업무 - 직업훈련 위임사항 - 생업자금 지원 - 취로사업 실시(총소요의 50%) |

시 상

| 소관 | 사무분야 | 경비부담구분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자치구비 |
| 보건 사회국 | | · 교육보호(학자금보조) · 거택보호자녀 : 국비50%, 시비25% | - 교육보호(학자금지원) · 거택보호자녀 : 구비 25% |
| | 17.의료보호 | · 시설보호자녀 : 국비50%, 시비50% | |
| | | · 자활보호자 자녀 : 국비50%, 시비50% | |
| | | · 의료부조자 자녀 : 국비50%, 시비50% | |
| | 17.의료보호 | ○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| ○ 의료보호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집행 - 의료보호대상자 지정 및 관리 - 보호비용의 징수 및 지급 (지방비부담액 전액) - 기타 의료보호실시 업무 |
| | 18.장애자복지 | ○ 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○ 심신장애자의 집진, 재활 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○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·지원 | ○ 심신장애자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중 시위임 사무 |
| | 19.전염병예방 및 기타질병 의 예방 | ○ 전염병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대주민 홍보 | ○ 전염병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 계도 |

1990. 7. 16
시장

| 소관 | 사부분야 | 경비부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담구분비 |
| 보건 사회국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○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○ 전염병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그 기관 소요경비 보조 ○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○ 약물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 ○ 결핵진료소 및 요양소의 설치 운영 ○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○ 전염병 예방 대응시설 지정운영 ○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○ 기생충 예방 ○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|
| | 20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| ○ 자치구 보건소(지소) 업무의 지도 감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소(지소)의 설치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물건립(국비50%, 자치구비50%) - 보건소(지소)장비의 설치 및 보강(국비50%, 자치구비 50%) - 보건소(지소)의 유지운영 |
| 가정 복지국 | 21. 노인, 아동,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 및 복지증진 | | |

1990. 7. 10
시장

| 소관 | 시 부문 야 | 상 비 부 시 용 특 만 시 비 | 단 구 분 기 치 구 비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
| 가 정 복지국 | 가. 노인복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복지사업 계획의 수립·조정 ○ 경로사업의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노우대 사업시행 - 재가노인 봉사활동 - 노인상담소 운영 및 노인능력개발, 직종보급 ○ 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,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단위 노인복지사업 계획 수립 ○ 경로사업의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인건강 진단 - 노인봉사대 운영·지원 - 경로당, 노인정, 노인교실 기타 구단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, 지원 -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, 오락사업 등 - 경로주간 설정, 운영 ○ 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한 시 위임 사무집행 |
| | 나. 아동복지 사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동상담소 설치, 운영 ○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○ 시단위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회관 - 아동전용 체육, 연주, 영화, 과학전람시설 등 ○ 아동보호, 복지시설의 설치, 운영 ○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 ○ 구단위 아동전용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회관 - 아동전용 체육, 연주, 영화, 과학전람시설 등 ○ 아동보호, 복지시설 관련 시 위임사무 |

1989. 7

| 소관 | 사무분야 | 경비부담구분 | |
|-----------|----------|--|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자치구비 |
| 가정 복지국 | 다. 청소년복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단위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- 청소년 회관 - 청소년 종합복지관 - 근로청소년 임대APT - 청소년 광장 - 열람석 200석 초과 청소년 독서실 설치 - 기타 시단위 청소년 이용, 수용 복지시설 ○불우청소년 보호지원 -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- 불우청소년 수용·이용 시설의 설치, 운영,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단위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- 공부방(열람석 50석 이하) 설치, 운영 - 독서실 설치 운영 (열람석 200석이하) - 기타 구단위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, 운영 ○불우청소년 보호지원 - 소년소녀 가장세대 파악, 관리 - 불우청소년 수용·이용 시설에 대한 위임 사무처리 |
| | 라. 모자복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모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, 지원 - 모자보호시설 - 모자자립시설 - 미혼모시설 - 일시보호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모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위임 사무집행 |

1990. 7
시

| 소관 | 사무분야 | 경비부담구분 | |
|-----------|--|---|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자치구비 |
| 가정 복지국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녀복지관 및 상담소 ○ 요보호 모자세대에 대한 보호, 지원 - 생계비 지원 - 아동교육비 지원 - 아동양육비 지원 - 직업훈련 및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요보호 모자세대의 파악관리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. 부녀 아동 복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단위 부녀 아동 복지 시설의 설치, 운영 지원 - 부녀복지관 - 부녀상담실 - 기타 광역 부녀, 아동 복지시설 ○ 윤락여성선도 및 직업 보도 ○ 윤락여성 지도소 및 직업 보도시설의 설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단위 부녀 아동 복지 시설 설치, 운영 지원 - 부녀교실 운영 및 여성교육 - 탁아원 - 유아원 - 기타 구단위 부녀, 아동복지시설 ○ 윤락여성 실태조사, 관리 ○ 윤락여성 지도 및 직업 보도관련 시위임 사무 처리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2.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설묘지, 공설 화장장 또는 공설 납골당의 설치 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연분묘의 정리 ○ 무연유골 처리 |

1990. 7
시장

| 소관 | 사 무 분 야 | 경 비 부 담 구 분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| 시 율 특 별 시 비 | 자 치 구 비 |
| 산 업 경제국 | 23. 소비자 보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비자 개몽교육 ○ 소비자 보호전담 기구 설치운영 및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의 육성 ○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 · 검사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○ 종합구판장 설치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가자도 단속 ○ 소비자 고발센터 등 소 비자 보호전담기구의 운영관리 ○ 구판장 운영관리 |
| | 24. 중소기업의 육 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○ 중소기업 이전 실시 계획의 작성 ○ 중소기업 육성보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해지역 중소기업 제품 의 구매 촉진 |
| | 25. 지방공기업 의 설치 및 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사의 설립·운영 ○ 지방공단의 설립·운영 ○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| |
| | 26. 농림, 축, 수 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산물 수산기반 조성 사업 지원 ○ 농산물 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조정 ○ 농산물 집하장 설치운영 ○ 가축시장 개선운영 ○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○ 농업생산물 및 시설자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시행 ○ 농산물 병충해 방제지도 |

1990. 7. 16
시장

| 소관 | 사부분야 | 경비부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담구분 자치구비 |
| 산업 경제국 | 27. 축산개발 및 진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의 재해대책 ○보호종축의 지정 ○가축개량, 증식보호 ○축산단체지도 육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진, 투약 |
| | 28. 가축전염병 예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보건환경연구원 및 시험소 운영 ○도축장 운영 및 관리 | |
| 주택국 | 29. 도시재개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도시재개발 및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시위임사무 집행 |
| | 30. 주거환경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을 위한 시위임 집행사무 |
| | 31. 도시환경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광고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광고물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치허가 및 신고 -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|
| 도로국 | 32. 도로의 설치, 유지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노폭 20m 이상 도로의 개설확장 ○노폭 20m 이상 차도의 유지보수 관리 ○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폭 20m 이상 도로의 지하보차도 육교 - 노폭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 설치 개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노폭 20m 미만 도로의 개설확장 ○노폭 20m 미만 차도의 유지보수 관리 ○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폭 20m 미만 도로의 지하보차도 육교 - 노폭 20m 미만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개량 |

| 소관 | 시 무 분 야 | 경 비 부 | |
|-----|---------|---|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담 구 분 |
| 도로국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 - 한강 상 교량 - B=20m 이상 일반교량 - 차도육교 및 고가차도 - 입체교차시설 ○ 노폭 20m 이상 도로변의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○ 노폭 20m 이상 도로의 재설작업 ○ 노폭 20m 이상 도로의 굴착복구 및 굴착복구 기금운영 ○ 노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미불 보상 ○ 유료도로의 신설, 개축, 수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 - B=20m 미만 도로의 일반교량 - 일반터널의 유지관리 ○ 노폭 20m 미만 도로변의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○ 노폭 20m 미만 도로의 재설작업 ○ 도로의 굴착승인 및 20m 미만 도로의 복구와 굴착복구 기금 운영 ○ 노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한 미불보상 ○ 전체 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|
| 하수국 | 33.차 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할하천, 지방하천, 준용하천의 복개정비 유지 관리 ○ 직할·지방·준용하천 부속물의 관리 ○ 직할·준용·지방하천 편입토지의 미불보상 ○ 우수배제펌프장 건설 보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거의 복개 정비 유지 관리 ○ 구거의 부속물 관리 ○ 구거면입토지의 미불보상 ○ 우수배제펌프장 유지관리 |

1990. 7. 16
시 장

| 수관 | 사무분야 | 경비부담구분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세용특별세비 | 자치구비 |
| 하수국 | 34.하수 | ○전농, 장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| ○수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 |
| | | ○대단위, 광역 공공하수도 사업 -하수처리장, 차집하수관 거설치, 유지관리 -간선하수도(D=900mm 이상) 설치, 개량 | ○지역공공하수도 사업 -지선하수도(D=900mm 미만)설치, 개량 ○간선 및 지선 하수도의 유지관리 |
| | 35.재해대책 | ○구청장이 행한 응급조치 의 이행 ○재해시설의 설치 ○재해구호 ○해빙기 안전대책 수립 ○재해구호기금 특별회계 설치·운영 | ○수방단의 조직·운영 ○방재훈련의 실시 ○재해응급대책의 수립시행 ○재해시설의 설치 ○재해구호기금특별회계 설치·운영 |
| 환경 녹지 | 36.인야, 녹지 관리 | ○천연림 보육사업 -천연기념물 ○야생동물 보호계획 수립 지도 ○사방사업 및 절개지 미화단장 시행 -단위면적 3,000㎡초과 사업비 전액 | ○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-지정보호수·보존관리 ○야생동물 보호추진 ○사방사업 및 절개지 미화단장 사업 시행 -단위면적 3,000㎡이하 사업비 전액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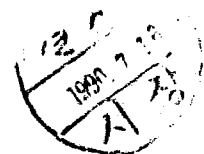
| 소관 | 사무분야 | 경비부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담 구분 자치구비 |
| 환경 녹지 | 37.공원녹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가로수 녹지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종로, 시청앞, 서울역, 남대문, 대학로의 녹지대 ○꽃묘생산 및 보급 ○공원의 설치(조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자연공원, 묘지공원, 유원지의 조성 - 면적 30,000㎡초과의 근린공원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가로수, 녹지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가로수 녹지대관리 ○꽃묘식재·관리 ○공원의 설치(조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적 30,000㎡이하의 근린공원조성 - 어린이 공원의 조성 ○공원의 유지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자연공원, 근린공원, 어린이공원, 묘지공원, 유원지의 유지관리 |
| | 38.환경분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산업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○오염(대기오염, 소음, 진동, 자동차, 공해)의 방지대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공해에 관한 지도 및 단속 |
| | 39.천연기념물 보호 | ○천연기념물의 보호 유지관리 | |
| 문화 관광국 | 40.유형문화재 | ○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| ○향토사적 보수 및 유지관리 |
| | 41.무형문화재 보호 | ○무형문화재 보호·관리 | - |

1990 7
장

| 소관 | 사무분야 | 장비부담구분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서울특별시비 | 자치구비 |
| 교통국 | 42. 지방문화 예술활성화 | ○시단위 지방문화사업 | ○구단위 지방문화사업 |
| | 43. 주차장 | ○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 의 수립 및 시행 ○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○시단위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| ○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 의 수립 및 시행 ○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○구단위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|
| | 44. 교통안전 시설 | ○교통신호기, 안전표지판, 차선 및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·관리 | ○도로안내 표지판의 설치, 유지, 관리 |
| 민방위 | 45. 불법주차 단속 | ○불법주차 단속계획 수립 및 실시 | |
| | 46. 민방위 시설 | ○민방위교육 기본시설 설 치 및 유지관리비 100% ○기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설치 및 운영비 50% | ○기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설치 및 운영비 50% |



서울特別市와自治區間의財政負擔에關한規程(案)



서울特別市

서울特別市와 自治區間의 財政負擔에 關한 規程(案)

1. 制定理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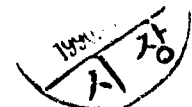
- 現行 市와 自治區間 事務配分이 包括的이고 不分明하거나, 偶발적이고 特殊한 事業의 境遇 事務分擔이 明確하지 않아 이에 따른 財政負擔 基準 制度的으로 未樹立
- 現行 條例上의 權限 委任이나 事務의 一般的인 內部委任의 境遇에도 그에 따른 財政負擔에 關한 事項은 從來의 慣行에 따르고 있음
- 이상과 같은 境遇에 대한 未비점을 補完, 合理的이고 具體的이며 體系的인 財政負擔에 關한 一般原則을 設定

2. 主要骨子

- 市와 自治區間의 事務配分에 따른 財政負擔 基準 設定
 - 現行 地方自治法 및 同法 施行令上 包括的이고 不分明한 事務配分內 譯을 細分化, 具體化하여 再分類, 이에 따른 財政負擔 基準 設定
 - 地方自治法上 未規定된 事務中 市와 區間의 財政負擔에 관하여 다른 의 소지가 있는 事務에 대한 財政負擔 基準 設定
- 國庫補助事業에 대한 市와 自治區間의 財政負擔 基準 設定
 - 現行 國庫補助事業의 地方費 負擔에 대한 市와 自治區間의 財源負擔에 관한 內務部令은 內務部 傘下團體를 基準한 것으로 우리市 適用에 一部 부적절하거나 包括的이고 漏落된 事項이 있어 이에 대한 細部基準 再設定

3. 制定根據

- 地方自治法 第9條, 第10條, 第16條 및 同法 施行令 第8條
- 地方財政法 第19條 및 同法 施行令 第26條



서울特別市와 自治區間의 財政負擔에 關한 規程(案)

第1條(目的) 이 規程은 地方自治法 第9條, 第10條, 同法 施行令 第8條의 規程 및 서울特別市 行政權限 委任條例에 의한 所管 事務遂行에 따른 서울特別市와 自治區가 各各 負擔하여야 할 經費의 種目과 內容, 基準을 設定 함으로서 合理的인 財政運用을 통한 効率的인 市政目標의 達成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(適用範圍) 이 規程의 財政負擔 事項에 關하여 法令, 條例 및 規則에 따로 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이 規程을 適用한다.

第3條(財政負擔의 種目과 基準) ①서울特別市(이하 "市"라 한다)와 自治區가 各各 負擔하여야 할 經費의 種目과 內容 및 基準(이하 "財政負擔基準"이라 한다)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

②市長을 第①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市와 自治區의 財政형편상 또는 施策推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財政負擔基準에 定한 事項과 는 달리 別途의 追加 負擔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.

第4條(財政負擔에 따른 財源의 種類) ①~~서울特別市(이하 "市長"이라 한다)~~과 自治區廳長(~~이하 "區廳長"이라 한다~~)이 所管事業^{事務}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市費 및 區費로 ^{구분}負擔함에 있어서는 各各 다음 各號의 ~~區分에 따른~~ 財源을 使用할 수 있다. _{아래정관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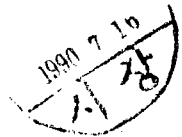
1. 市 費

가. 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財源

나. 基 金

다. 自治區에 對한 特別交付金 및 財政補助金

라. 其 他



2. 區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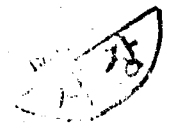
가. 區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財源

나. 基 金

다. 其 他

附 則

이 規程은 발령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

3509

24. 24

173
177